

企業內模範特許管理體制의 設計

◁ 調 査 部 ▷

—承 前—

第 4 章 特許情報管理

1. 特許情報管理에 대한 基本的 考察

1) 特許情報管理의 使命

特許情報管理의 使命은 企業內의 諸活動을 遂行하여 가는 過程에서 必要로 하는 特許情報를 目的에 따라서 正確하게 그리고 適時에 活用할 수 있도록 環境을 整備, 運用하여 가는 것이다.

2) 特許情報의 特性

特許情報의 特性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觀點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特性을 充分히 認識하여 놓는 것이 特許정보를 더 한층 有效하게 利用하기 위하여 必要하다.

a) 權利情報과 技術정보로서의 二面性

特許는 말할 것도 없이 權利情報라고 하는 側面뿐만 아니라 技術開發活動의 方向을 알아보는데 있어서의 技術정보로서의 側面도 가지고 있다. 從來에는 자칫하면 前者로서의 利用에만 偏重되어 있었으나 特許法의 改正에 의하여 出願으로부터 1年半을 經過하면 모든 것이 自動적으로 公開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後者로서의 利用價値가 飛躍적으로 增大하였다.

b) 特許정보의 內容으로 본 特性

① 새로운 技術정보이고 權利정보인 점

② 各國의 特許정보는 書誌의 事項이 統一되어 있는 점

③ 技術內容이 具體적으로 記載되어 있는 점

④ 한편 公報정보는 審査되어 있어 信賴性이 높은 점

⑤ 모든 情報에 詳細한 分類가 붙어 있어 利用하기

쉬운 점

⑥ 모든 技術分野에 걸쳐 世界의 技術水準이 쉽게 比較되는 점 등등이다.

c) 特許정보의 管理面에서 본 特性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은 特許정보의 特性을 바탕으로 特許정보의 管理面에서 본 特性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① 企業活動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점

企業이 어떤 領域에 注目 또는 進出할 것을 定하면 그 領域에 있어서의 特許정보를 반드시 蒐集하여야 하며 또 그에 漏落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外部專門機關을 포함한 情報의 network 組織을 充分活用하여 그 目的을 達成함이 重要하다.

② 繼續性이 要求되는 점

한번 蒐集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事業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 進展에 따라 事業에 match한 情報를 蒐集하고 그 活用을 도모하여 나가야 한다.

③ 即時性和 完全性이 要求되는 점

公開·公告公報에 의하여 他社의 特許에 대한 抵觸이나 自社保有特許와의 關係등에 대하여 即時에 完全한 對應이 要求된다.

④ 大量정보의 管理인 점

件數 및 volume이 대단히 커서 蓄積정보의 保管 및 檢索의 研究改善이 不可缺이다.

⑤ 利用目的이 多目的인 점

特許정보는 企業에 있어서의 모든 活動에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利用目的은 多様하다. 그 때문에 管理對象資料의 種類도 많고 特許정보管理는 복잡하게 되며 그 企業의 體質에 맞는 것이 아니면 充分히 그 效果를 發揮할 수 없다.

□ 前進の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14)

3) 特許情報의 利用目的

特許情報의 利用目的을 列擧하면 下記와 같으며 대단히 多目的으로 利用되므로 이들의 目的에 應하여 必要한 情報가 容易하게 蒐集될 수 있는 分類, 保管 및 檢索 system의 確立이 必要하다.

한편 企業活動의 國際化등에 따라서 諸外國의 特許를 對象으로 한 管理體制의 整備도 重要하다.

a) 技術開發段階에서부터 事業化決定에 이르는 事宜의 利用

① 先行技術의 調査를 實施하여 既往의 技術體系化를 파악하고 技術開發의 着手狀況 및 動向, 技術水準등을 把握하기 위하여

② 出願人 및 發明者의 情報로부터 共同研究의 狀況이 라든가 發明者人口등을 把握하여 經營戰略에 결부시키기 위하여

③ 把握한 情報中에서 重要技術의 諸事項을 抽出하고 體系화된 flow 中에 技術開發의 可能性, 餘地의 有無 또는 技術導入, 技術提携등의 可能性을 檢討하고 評價하기 위하여

④ 餘地가 發見된 경우에는 그 領域으로의 進出을 決定하거나 또는 學論되는 技術開發課題를 決定하기 위하여

⑤ 上記의 領域 또는 課題로서 學論되는 範圍, 見樣 등의 詳細한 것을 定하기 위하여

⑥ 技術開發의 進行過程에 있어서 變動하는 特許環境에 即應한 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b) 生産, 販賣등 事業推進過程에서의 利用

① 生産技術의 改良, 新品種, 新用途의 開發등에 關한 他社의 動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② 上記에 의한 自社의 開發方針을 決定하고 推進하기 위하여

③ 關係分野의 技術水準을 把握하고 適正한 出願과 有效한 權利確保를 推進하기 위하여

④ 自社技術의 他社權利와의 抵觸關係를 發見하고 繫爭事件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⑤ 隨時發生하는 새로운 他社 特許中 重要한 것을 把握하고 그 特許의 無効化라든가 license 取得의 要不要, 自社技術開發의 軌道修正與否등의 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2. 管理對象資料

1) 資料의 區分

特許資料는 便宜上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① 1次資料

特許出願明細書, 公開(告)公報등 原報(全文)資料

② 2次資料

特許抄錄등과 같은 原報를 加工하여 作成된 要約資料

③ 3次資料

特許書誌메이더등을 利用하여 作成된 特許目次, 索引 list 對照表등.

2) 資料의 種類

特許情報管理의 管理對策資料에는 下記와 같은 것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分類하고 保管하고 使用目的에 따라 檢索될 수 있게 하느냐가 情報管理의 課題이다.

a) 社外作成의 特許資料

(1) 一般情報

① 國內외의 公開·公告公報

② 同上的 抄錄

③ 同上的 索引目錄

④ 同상에 關聯한 news類

⑤ 其他

(2) 其他의 情報

① 委託調査關係資料

② 紛爭關聯諸資料

③ 技術 또는 特許契約關係 諸資料

④ 特許關係法規의 關聯 諸資料

⑤ 其他

b) 社内作成의 特許關聯情報

(1) 一般情報

① 報發明届出書 및 關聯諸資料

② news 速報

③ micro 複寫資料

④ 週及檢索關係 諸資料

⑤ 事業所別 技術開發計劃書

⑥ 特許取得計劃書 및 그 project file

⑦ 社内保有特許의 履歷臺帳

⑧ 其他

(2) 特許加工情報

① 技術動向調査報告書

② 競合他社 動向調査書

③ 上記關聯의 特許 map

④ 特許販賣 또는 製品에의 活用關聯諸資料

⑤ 其他

(3) 其他의 情報

① 共同開發關係 諸資料

② 技術 또는 特許契約關係 諸資料

③ 紛爭關係 諸資料

④ 其他

□ 前進の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14).....

3) 資料의 形態

資料의 形態와 整理保管方法

發 行 形 式	例 示	整 理 保 管 方 法 等
書籍, 雜誌形狀	特許公報(合本), 特許抄錄誌 特許索引誌 등	書架를 利用하고 番號順으로 整理保管
sheet 形狀	特許公報(分冊), 特許抄錄 seat 등	特許分類別 또는 自社固有의 製品別, 分類別, 競合 他社別 등에 file하여 保管. 副分類가 있는 경우는 각각 그 file 에도 넣는다.
card 形狀	manual card 機械檢索 card 등	manual-card의 경우는 索引 card를 使用하여서 區分하고 cardcase에 保管, hand-sort-card, 機械檢索 card 등을 適宜 presort한 위에 randon 配置
microfilm microfish 形 狀	特許 micro-film, 特許抄錄 microfilm 등	rollfilm은 magazine 등에 收納하여 film-cabinet에 保管. microfich는 fish用 cabinet 또는 fichholder에 收納하여 保管.

4) 特許資料의 實例

a) 韓國特許關係

① 1次資料

特許, 實用新案公報는 各各 分離해서 權利別로 發行된다. 公開公報는 1983년부터 發行될 豫定이다. 現在 發行되는 公報는 出願의 公告番號順으로 類別과 상관 없이 隨時發行된다. 分類는 國際特許分類(IPC)에 따르되 從來의 韓國分類(KPC)를 併用하고 있다.

② 2次資料

韓國特許協會가 每月 發行하는 特許實用新案 登錄目錄과 韓國產業技術研究院에서 發行하는 代表的인 것으로는 英文特許抄錄誌, 需要者가 나뉠대로 整理分綴하는 類別, 出願人別 分類綴, 그리고 特許廳이 發行하는 權利別, 類別, 出願人別 目錄이 있다. 이밖에 特許, 實用新案類別公報(1963~1977)의 集大成版이 나와 있다.

英文特許抄錄誌 目次(例)

Pub. No.	Int. Cl ³ .	Title of Invention
1879	C 08 J 9/04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phenol-formaldehyde foams
1880	A 61 J 3/07	Process for preparing capsule employing phase transfer catalysts
1881	A 61 L 9/01	Preparing method of deodorant
1882	B 05 D 1/04	Atomisation of liquids
1883	B 29 C 17/00	Method of forming socket on the end of plastic pipe
1884	B 29 J 5/02	Method of preparing particle board
1885	C 07 C 45/00	Oxidation intermediate products of toluens with ether bonds
1886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87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88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89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90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91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92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1893	C 07 D 217/24	Process for preparing phenylethylamines

□ 前進の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14)

(特許)

工業所有權登錄目錄(例)

類別	登錄番號	發 明 的 名 稱	出願番號	出 願 公 告		登錄日字	登 錄 權 者		公告公報號數
				日 字	番 號		住 所	姓 名	
C07	9575	N-포손폰노레틸글리신의 제조방법	76-3242	80. 11. 17	80-1356	4. 1	미국 미조리63166 센트루이스블바드 노스린버그 800		第526號
"	9576	1, 4-디하이드로퍼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	76-1633	12. 29	80-1593	"	일본오사카시히가시구도쇼마찌4-3	후지사와 야구원고교(주)	第537號
"	9577	"	80- 540	"	80-1591	"	"	"	"
"	9578	"	80- 541	12. 30	80-1611	"	"	"	第538號
"	9579	"	80- 542	12. 29	80-1592	"	"	"	第537號
B07	9580	치환된 4-페닐-이미다졸린 유도체의 제조방법	76-1315	12. 17	80-1477	4. 2	독일 D6507 인겔 하임/라인	CH 베링 거존	第532號

權利別·類別出願索引誌(例)

분 류	공 고 번 호	발 명 및 고 안 의 명 칭	출 원 인
1A131.1	특허 71-133	냉경화보습주조 방법	신 해 풍
1A131.2	특허 75-378	전후 왕복작동케된 심경용골토기	문 병 현
1A15	특허 56-535	맥전담경기	유 정 근
1A16	특허 56-812	자동경지기	송 진 광 외1인
	특허 58-1297	자동경작기	단 유 인
1B0	특허 59-1759	자동과중기	윤 태 순
	특허 69-230	설탕을 함유한 농작물의 설탕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아이듀우판디네 모아앤드컴파니
1B1	특허 74-156	들잔디씨의 처리방법	홍 진 개 발 (주)
1B4	특허 60-2018	식 종 기	별 상 복
1B4	특허 59-1540	이앙기의 적묘 및 식묘작용 반복기구	이 은 홍
	특허 59-1541	수답용 경운기 및 이앙기용 차륜	"
1B4	특허 77-28	묘 이식기	이 부 경
	특허 70-77	이 앙 기	오 영 환

特許·實用新案類別公報(1963~1977)目次(例)

(제 1 권-166 권)

권수	분 류 별	산 업 별	권수	분 류 별	산 업 별
1	1류 A, C, D	1산업부문중 농예	28	16류 E332-261	2산업부문중 유기회합물
2	1류 B	"	29	16류 E362-391.3	"
3	2류	1산업부문중 산림, 원예	30	16류 E4-433	"
4	3류 A-E	1산업부문중 곡류의 조제가공	31	16류 E44-483	"
5	3류 F-J	"	32	16류 E5-551	"
6	4류	1산업부문중 비료	33	16류 E552-583	"
7	5류	1산업부문중 포획, 방제	34	16류 E6-61(2-1)	"
8	6류	1산업부문중 동물사육	35	16류 E61(2-2)	"
9	7류	1산업부문중 양잠	36	16류 E611-64	"

—계속—